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9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8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매각대금 분할 납부 대상 추가 (안 제38조제3항 제5호)

- 기업유치를 위해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
(최초 납부금액은 매각 대금의 30퍼센트 이상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1.07.21. ~ 21.08.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[기획실-9936(2021.07.20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[기획실-9936(2021.07.20.)호]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[가족복지과-28211(2021.07.16.)호]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기업유치를 위해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. 이 경우 최초 납부금액은 매각 대금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1.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39조(대금의 납부 및 연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(全額)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·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·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
2.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
3.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(제3조제5항제1호)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임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재무과장 정유진
연락처	(033) 330 - 2270